

SE♥UL M! SOUL

「2026년 2분기」
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6. 6.

재난안전실

보고 안건

(단위: 천원)

연번	예비비 사용건	소관부서	사용액
계			3,717,895
1	'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' 예비비 사용	도로계획과	3,717,895

□ '26.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, 3,717,895천원

- 공사대금 청구 소송 :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3,717,895천원 집행

< 소송개요 >

-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4565 공사대금
- 당 사 자 : (원고) 삼성물산(주), 삼성이엔에이(주) / (피고) 서울특별시
- 사건공사 : 월드컵대교 건설공사
- 청구내용 :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(11·12·13·16차수)에 따른 간접공사비 6,171,860천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
- 판결결과 : 1심 일부승소('26. 2. 11. 선고, 가집행 선고)
- 판결내용 : 인정 간접공사비 4,096,385천원(11·12·16차수)의 70%인 2,867,469천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※ 13차수는 14차수 공사기간 중첩으로 불인정

- 원고들은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11·12·13·16차수 공사 중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(보완설계,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심의 지연 등)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신청함
- 원고측은 11·12·13·16차수 공사 연장기간 간접비 6,171,860천원을 청구하였으나, 13차수는 14차수 공사기간과 중첩되어 불인정되었으며, 11·12·16차수 간접비 4,096,385천원의 70%인 2,867,469천원으로 감액 조정됨
- 판결결과에 따라 우리 시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판결금에 대하여 고율(연 12%)의 지연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여,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3,717,895천원을 '26. 4. 17. 원고 측에 지급하였음
- 또한 서울시는, 원고 측의 당초 11·12차수 계약금액 조정신청 사항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**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항소제기**한 상황임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	계		3,717,894,550	
도로계획과	공사대금청구	배상금 등 (305)	3,717,894,550	'26. 4. 17.